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제정 2006.12.11. 지침 제114호 개정 2008.11.11. 지침 제124호 개정 2009.02.06. 지침 제126호 개정 2009.03.02. 지침 제128호 개정 2009.06.03. 지침 제132호 개정 2010.11.26. 지침 제155호 개정 2011.04.28. 지침 제160호 개정 2012.04.25. 지침 제172호 개정 2012.11.06. 지침 제180호 개정 2013.04.04. 지침 제186호 개정 2014.11.21. 지침 제210호 개정 2016.03.08. 지침 제231호 개정 2016.05.03. 지침 제234호 개정 2017.12.22. 지침 제251호 제목개정 2018.12.28. 규정 제341호 개정 2019.12.09. 규정 제372호 개정 2019.12.31. 규정 제386호 개정 2020.05.04. 규정 제391호 개정 2021.10.22. 규정 제439호 개정 2021.11.23. 규정 제444호 개정 2025.01.02. 규정 제523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19조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의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1.11.23.〉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이 파견하는 해외 봉사단원(이하 "봉사단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2021.11.23.>
-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이라 함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제5호에 따라 대한민국 과 협력대상국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봉사단원으로 협력 대상국에 파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파견국"이라 함은 봉사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는 협력대상국을 말한다.
 - 3. "소속기관"이라 함은 봉사단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파견국의 학교, 기관, 정부부처 등을 말한다.
 - 4. "원격 봉사단원"은 파견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파견국을 위해 원

격 활동을 하는 봉사단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2조의3(해외봉사단파견사업의 구분)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 봉사단원의 계약기간, 파견형태, 모집·선발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계약기간에 따른 구분
 - 가. 단기 봉사단 : 최초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
 - 나. 중기 봉사단 : 최초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
 - 다. 장기 봉사단 : 최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
 - 2. 파견 형태에 따른 구분
 - 가. 개인 봉사단 : 파견 직종별로 활동하는 개인 단위로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
 - 나. 프로젝트 봉사단 : 중장기적 성과달성을 목표로 팀 단위로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
 - 3. 모집.선발 대상에 따른 구분
 - 가. 시니어 봉사단 : 만 50세 이상이고, 파견직종 근무 10년 이상인 경력자를 모집· 선발하여 파견하는 사업(이하 그 봉사단원을 "시니어단원"이라고 한다)
 - 나. 드림 봉사단 :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3년간 직무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원을 모집·선발하여 파견하는 사업(이하 그 봉사단원을 "드림봉사단원"이라고 한다)
 - 다. 일반 봉사단 : 시니어단원, 드림봉사단원 등 특별한 구분 없이 봉사단원을 모집·선발하여 파견하는 사업(이하 그 봉사단원을 "일반단원"이라고 한다)

[본조신설 2025.01.02.]

제2장 모집·선발 및 파견

- **제3조(자격요건)** ① 봉사단원 지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1., 2012.11.06.>
 - 1.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개정 2008.11.11., 2012.11.06., 2014.11.21.〉
 - 2.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개정 2021.11.23.>
 - 3. 파견국이 요청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11.23.〉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5. 남자는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
 - ② 〈삭제 2018.12.28.〉
 - ③ 일반단원으로 선발된 자는 봉사활동 중 시니어단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 도 시니어단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 다. 〈신설 2012.04.25.〉
 -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3.02.〉 〈개정 2012.04.25.〉

⑤ 제1항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봉사단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타 월드프렌 즈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4.11.21.〉

제3조의2 삭제 <2013.04.04.>

- 제4조(모집 및 선발) ① 봉사단원은 공개모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추천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 ② 봉사단원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26.>
 - ③ 협력단은 모집선발 면접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료(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05.04.〉
 - ④ 협력단은 원격 봉사단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1.02.〉
- 제5조(국내교육대상자의 결정) 협력단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 한해 신용조회, 신체검사, 해외봉사단 적합도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국내교육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0.11.26., 2012.04.25., 2016.05.03., 2019.12.31., 2021.10.22.〉

[제목개정 2012.04.25.]

제5조의2(신용조회 등) 협력단은 신체검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봉사단원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불합 격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본조신설 2018.12.28.]

- 제6조(국내교육) ① 국내교육대상자는 파견에 필요한 소정의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이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협력단에서 실시한 국내교육을 이수한 자에 게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 면제 등 관리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04.25., 2014.11.21., 2018.12.28.〉
 - ② 삭제 <2021.11.23.>
 - ③ 협력단은 국내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2.04.25.]

제7조(계약체결) 협력단은 국내교육을 이수한 자와 봉사단원 활동 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다만,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국내교육 시작일을 계약 시작일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8조(파견)** ① 협력단은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봉사단원을 필요한 출국수속을 거쳐 해당국가에 파견한다.
 - ② 파견기간은 봉사단원이 본국을 출국하는 날부터 제7조 따른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를 말하며, 총 파견 기간은 봉사단 파견국의 수요에 따라 협력단이 정한다.
 - ③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출국 전까지 안전 문제, 파견국 및 소속기관의 단원 수용 여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견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내교육 수료일 기준 60일이 초과하여도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현지적응교육)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파견국 현지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봉사단원이 동일한 국가로 1년 이내 재파견되는 경우는 현지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04.25.] [전문개정 2025.01.02.]

제3장 복무

- 제10조(준수사항) ① 봉사단원은 자발성·무보수성·공익성의 활동원칙에 따라 파견국 국민과 의 우호증진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봉사단원 활동 계약서 및 서약서 준수
 - 2. 대한민국 및 파견국의 법령준수와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활동의 금지
 - 3. 봉사활동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활동 금지
 - 4. 파견국 무단이탈 금지
 - ② 봉사단원은 단신 부임하여 파견 기간 동안 단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시니어단원이 자기 책임하에 배우자 동반을 신청하면, 협력단은 이를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국 시기는 시니어단원의 소속기관 부임이후로 한다. 이 경우 배우자 동반에 따른 경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1. 협력단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공동거주를 금지한다.
 - 2. 봉사단원은 단신 부임 위배가 예상되면 국내교육 입교시 협력단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협력단은 파견국 또는 소속기관을 변경한다.
 - ③ 봉사단원은 파견국 소속기관의 지시에 따라 맡은바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11조(지휘·감독)** 봉사단원은 현지에 파견된 기간 중 협력단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1.23.>
- 제12조(활동보고) 봉사단원은 파견 후 봉사활동 내역, 성과 및 안전상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협력단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11.23.>
- 제13조(활동평가)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활동을 점검·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시 현지활동 평가, 봉사단원 개인별 역량(언어역량 진단평가 등) 및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평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03.02., 2018.12.28., 2019.12.31., 2025.01.02.〉
- **제14조(소속기관 변경)** 협력단은 파견국 내에서 봉사단원의 소속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5.01.02.〉
- **제15조(일시귀국)** ① 협력단은 아래 각 호의 경우 봉사단원의 일시귀국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개

- 정 2011.04.28.>
- 2.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국에서의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3. 삭제 <2019.12.31.>
- 4. 본인이 또는 본인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신설 2010.11.26.〉
- 5. 파견국 정세불안, 치안악화, 재난 등 협력단이 일시귀국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 ② 협력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호의 사유 중 공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3., 2014.11.21., 2019.12.31., 2025.01.02.>
- 제16조(휴가) ① 봉사단원은 파견국 내 혹은 파견국 외 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해외사무소장, 주재원 또는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이하 "해외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의 승인 하에 실시 하여야 하며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 휴가가 제한될 수 있다.
 - ② 파견국 외 휴가는 장기 봉사단원에 한하며, 파견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드림봉사단원의 파견국 외 휴가는 본국으로 제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휴가 가능 시점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파견국외 휴가를 조기에 허가할 수 있다.

- 제17조(계약연장)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최초 파견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해외사무소장 등의 의견과 현지활동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1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개정 2012.04.25., 2018.12.28., 2019.12.31., 2021.11.23., 2025.01.02.〉
 - 1. 최초 계약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봉사단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봉사단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5.01.02.〉
 - 2. 중기 봉사단원은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개정 2018.12.28., 2025.01.02.>
- 제18조(복무 관리 및 제재조치) ①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경우 주의, 경고, 계약해지(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협력단은 제1항의 조치를 포함한 봉사단원의 복무 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봉사단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견국 정부, 소속기관 또는 협력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그 봉사단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2.28.] [전문개정 2025.01.02.]

- 제19조(계약해지) 협력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단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봉사단원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봉사단원 자격이 박탈된 경우
 - 2. 봉사단원의 활동태만·수행 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 또는 재외공관장이 활동종료를 요청한 경우

- 3. 봉사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단순변심 또는 건강 이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4. 봉사단원이 제8조제3항의 사유로 파견취소되거나 제15조의 사유로 일시귀국 후 승인 기간 내 활동 복귀가 불가하거나 활동 중 파견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대피하여 대기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치료 등으로 30일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봉사단원이 현지적응교육을 수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 6. 기타 봉사단원 활동이 어려운 사유로 복무 관리 심의위원회가 계약 해지를 의결한 경우

- 제19조의2(조기귀국) ① 협력단은 파견국 또는 소속기관의 사정 및 진학, 취업 등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지 이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봉사단원이 현지에서 봉사활동 중 질병, 부상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귀국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조기귀국은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봉사단원의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봉사단원의 잔여 파견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③ 협력단은 제1항에 의한 조기귀국 봉사단원을 계약만료로 처리한다.
 - ④ 봉사단원이 조기귀국한 경우, 조기귀국일이 속한 달의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현지생활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01.02.]

- 제20조(인계인수) 봉사단원은 봉사활동이 계약기간 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귀국 전 해외사무소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 1. 봉사활동 개요 및 현황
 - 2. 활동 지역 조사 내용 및 유용한 현지 정보
 - 3. 인계자의 종합의견

[전문개정 2021.11.23., 2025.01.02.]

제4장 경비지급 및 활동지원

- 제21조(지원경비) ① 협력단은 봉사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 1. 삭제 <2021.11.23.>
 - 2. 왕복항공료
 - 3. 준비금
 - 4. 현지 정착비
 - 5. 현지 생활비

- 6. 주거비
- 7. 국내정착지원금(커리어적립금) <개정 2018.12.28.>
- 8. 화물탁송료 〈신설 2018.12.28.〉
- 9. 삭제 <2021.11.23.>
- 10. 기타 봉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봉사단원이 파견기관 혹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제 경비에 상응하는 현금·현물·주거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제22조(활동지원) ① 협력단은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파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09.>
- 제23조(의료지원) ① 협력단은 봉사단원이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협력단은 봉사단원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내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 정 2018.12.28.>
 - ③ 협력단은 3개월 초과 계약연장 예정 단원에 대하여 현지 건강검진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단원에게는 파견 중 1회 현지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19.12.31., 2025.01.02.〉
- 제24조(안전관리)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하여 치안상황 점검 및 긴급대 피를 위한 보험 가입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5조(재해보상) 협력단은 봉사단원에 대하여 국내교육기간 및 파견기간 동안 질병·재해· 사고 등에 대비하여 필요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4.25.>
- 제26조(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 파견) ① 협력단은 봉사단원의 복무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규정」 제3조의 해외사무소에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08., 2019.12.31., 2021.11.23.〉
 - ② 해외봉사단 코디네이터의 선발·계약·업무·복무·처우 및 관련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3.08., 2021.11.23.>

[제목변경 2016.03.08.]

- 제27조(유숙소의 운영) 삭제〈2025.01.02.〉
- 제28조(귀로여행) 파견기간이 만료된 봉사단원은 귀국 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안전 등단원 본인의 책임에 따라 파견국에서 체류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수 있다. 단, 드림봉사단의 귀로여행은 제한한다. <개정 2018.12.28., 2019.12.31., 2021.11.23., 2025.01.02.>
- 제28조의2(귀국보고)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은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협력단에 귀국 보고를 해야 하며, 귀국보고 지연에 따른 책임은 봉사단원에게 있다.

[본조신설 2025.01.02.]

- **제29조(귀국단원 지원)** 협력단은 귀국한 봉사단원의 국내정착 및 국내활동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3.02., 2012.04.25., 2025.01.02.〉
- **제30조(업무위탁)** ① 협력단은 해외봉사단파견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을 위해 협력단은 입찰 또는 공모 또는 협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입찰인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령과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등 관련 내규를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른 예산 산출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역경비 산정지침」,계약서 또는 약정서를 따른다.

제5장 사후관리

제31조(사후관리) 협력단은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봉사단원 중 자격을 갖춘 봉사단원에 대하여 취업진로별 보수교육, 취창업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등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12.31., 2025.01.02.〉
[제목개정 2018.12.28.]

부칙<2006.12.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재의 승인을 얻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해외봉사단워 파견사업 세부시행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2.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09년 1월 7일 이후 지원자에 대하여, 제10조제 2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현재 활동 중인 시니어단원 및 시행일 이후 파견 단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6.03.>

부칙<2009.03.02.>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총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4.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04.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되, 제20조는 2014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다.

부칙<2016.03.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05.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1호는 2016년 5월 11일부터, 제2조의2 2호는 2018년 8월 28일부터, 제6조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제16조2항, 제17조2호, 제19조의2 2항, 제28조는 2016년 12월 28일부터, 제19조의2 4항, 제21조 1항7호는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5.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선발된 프로젝트 봉사단원은 제7조 (계약체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